
인증표시의 사용안내서

(USER'S GUIDE FOR CERTIFICATION MARK)

SPEC-L-04(Rev.1)



작 성	검 토	승 인

기술사인증원 (SPEC Co., Ltd.)

☞ 마크의 종류

인증기관 마크 (단독으로 사용 가능)	인정마크(인증표시) (단독으로 사용 불가능)
	
인증기관(SPEC) 로고	ISO 9001 / ISO 14001 인증 / ISO 22000 /K-OHSMS 18001 인증

☞ 인증등록조직의 인증홍보에 대한 일반사항

1. 인증등록 조직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인증획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 받은 해당범위(사업장, 표준, 제품 및 활동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인증등록 조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OO부분에서 국제품질표준 ISO 9001 인증을 획득'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인증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인정마크 및 인증마크가 제품에 사용되어 제품인증인 것으로 오해되도록 홍보하여서는 안됩니다.
4.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ISO 로부터 인증 받은', 'ISO 인증', 'ISO 인증서', 'ISO 등록'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마크 및 인정기관의 인증표시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등록의 종류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인증등록조직에게 권한이 부여된 해당 부분에 한하여만 인증을 홍보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ISO 9001/ISO 14001/ISO 22000/K-OHSMS 18001 표준 중 두개 이상의 표준을 통합으로 획득한 경우, 획득한 표준의 "인증획득업체"라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ISO 9001/ISO 14001 통합 인증 시 - "ISO 9001/ISO 14001 획득 업체" 문구를 사용하여 표기 가능)

아래 표는 어떤 제품이 인증된 품질경영체제하에서 제조됨을 표시하는 인증마크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참고용으로 표현 한 것입니다.

		제품 *1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박스 등 *2	홍보를 위한 팸플릿 등
마크의 사용 *3	설명없음	허용안됨	허용 안됨	허용됨*5
	설명있음*4	허용안됨	허용됨*5	허용됨*5

- *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 용기 등에 들어있는 제품, 시험/분석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는 판지 등으로 만들어진 외부포장으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이는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마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휘로 이루어진 진술은 마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구는 정확하여야 하며,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4. 이는 "(이 제품은) KS Q ISO 9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경영체제를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지칭합니다.
- *5. 심벌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의 8.1(1)의 2), ④ 및 9.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기의 주석은 특정한 인증마크의 사용 조건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사용 및 인증홍보의 제한

1.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색상은 위에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인증기관 마크는 단독으로 사용 가능), 지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문서, 미디어 등은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의 사용중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인정마크 또는 인정기관 마크는 기술사인증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인증등록자가 생산한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 인증기관 명, 인증표준,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6. 자체, 발행문서, 송장, 광고, 홍보물 등에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마크를 사용하거나 "기술사인증원으로부터 KS Q ISO 9001 / ISO 9001(및/또는 KS I ISO 14001 / ISO 14001, KS Q ISO 22000 / ISO 22000, K-OHSMS 18001 /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한 업체"라는 방식으로 인증의 내용을 홍보 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범위에 관련되지 않은 문서에 인증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7. 인증기업은 제품의 포장에 인정마크와 인증기관 마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는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품의 포장』 또는 『단위포장의 포장』에 한하며, 제품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제품 및 단위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기술사인증원으로부터 KS Q ISO 9001 / ISO 9001(및/또는 KS I ISO 14001 / ISO 14001, KS Q ISO 22000 / ISO 22000, K-OHSMS 18001 /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하에서 제조된 OOO(제품명)"라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8.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는 제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인정마크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제품의 포장: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
-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연수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수단

2) 인정마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단위 포장: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과 담뱃갑, 통조림, 음료수캔 등의 용기와 같이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단위포장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깃발, 건물 또는 차량. 단, 건물 또는 차량제조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자사 경영시스템 인증사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 함.

9. 인정마크를 기관마크와 상하 또는 좌우 대칭이 되도록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합니다.

1) 좌우대칭으로 사용할 경우



KS Q ISO 9001 / ISO 9001 인증시

KS I ISO 14001 / ISO 14001 인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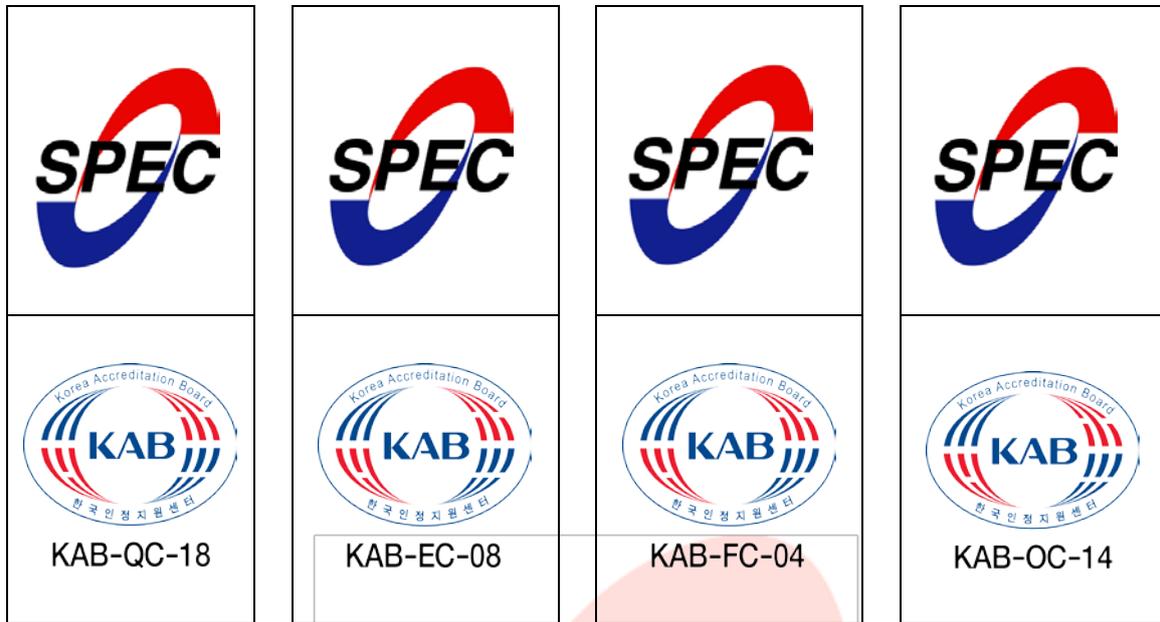
KS Q ISO 22000 / ISO 22000 인증시

K-OHSMS 18001 / OHSAS 18001 인증시



ISO 9001 & ISO 14001 통합 인증시

2) 상하대칭으로 사용할 경우



ISO 9001 인증시

ISO 14001 인증시

ISO 22000 인증시

OHSAS 18001 인증시

1.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인정마크 및 인증사실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2. 인증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